[별표 9의4]

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시설기준

(제51조의3 관련)

1. 강의실

□ 개수 : 최소한 강의실 1개

□ 규모 :

○ 수용인원이 20인 미만 : 33㎡(10평)

○ 수용인원이 20인 이상 : 33㎡(10평) + (1.65㎡/1인 x 20인 초과 인원 수)

□ 조도 : 평균이 300룩스 이상(책상면에서 측정한 조도)

□ 소음 : 평균이 55dB이하(책상면에서 측정한 소음)

□ 냉・난방 : 여름 섭씨 28도 이하, 겨울 섭씨 18도 이상 유지

2. 교육기자재

□ A/V(오디오, 비디오, 마이크로폰)

□ A/V 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

□ OHP, 빔 프로젝트, 스크린

3. 기타시설

□ 급수시설 : 냉온기능을 갖춘 급수시설과 급수대를 갖출 것

□ 휴 게 실 : 10인 이상이 동시에 휴게할 수 있는 면적과 소파를 갖출 것

□ 화 장 실 : 5인 이상이 동시 사용 가능 할 것